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산세 부과시기를 연 2회로 변경〉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산세 부과시기를 연2회로 변경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6.
3. 회부연월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

Ⅲ. 검토의견

1. 재산세 부과시기를 연2회로 변경

현행법상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1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년에 2회의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서 1기분은 6월 1일, 2기분은 12월 1일 등 2개로 나누어지며, 납기방식도 1·2기분에 각 과세물건별 납부세액의 1/2씩을 부과·고지하는 것으로 변경됨.

[개정안 반영에 따른 재산세 과세체계 변동 현황]

현행			개정안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대상
매년 6.1.	7.16.~7.31.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6.1.	(제1기분) 7.16.~7.31.	주택(1/2), 토지(1/2), 건축물(1/2), 선박(1/2), 항공기(1/2)
	9.16.~9.30.	주택(1/2), 토지	매년 12.1.	(제2기분) 1.16.~1.31	주택(1/2), 토지(1/2), 건축물(1/2), 선박(1/2), 항공기(1/2)

현행	개정안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11조(세율) ① ----- ----- -----금액의

현행	개정안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생략)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u>직전 연도</u>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u>다음 표의 구분과 같다.</u> <table border="1"> <tr> <th>기분</th><th>납기</th></tr> <tr> <td>제1기분</td><td>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tr> <tr> <td>제2기분</td><td>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r> </table>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 ----- ----- ----- -----<u>직전 기분</u>----- -----	기분	납기	제1기분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분	납기						
제1기분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기분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u>해당 연도</u>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④ (생략)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해당 기분(期分)</u>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 ----- <u>-해당 기분-</u>----- ---. -----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해당 기분</u>-----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 부담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기분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세 부담 상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6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연간 1회 부과되고 있으므로, 재산 소유권의 변동 이력과 무관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기간이 몇 개월에 불과한 경우까지 1년치의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재산세를 연 2회 부과할 경우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회·확인 절차 역시 연 2회 실시해야 하고, 과세대장도 연도별로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며, 연간 재산세 부과처리 및 고지서 발송 등의 행정업무도 2배로 증가되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산의 변동현황, 소유자 등에 대한 납세자 신고 등도 연 2회 필요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과거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위헌 소원’(2008. 9. 25, 2006헌마 111) 사건에서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고”,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을 따져 1년분의 세액을 나누어 과세

하면 조세징수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산세를 징수를 연 2회로 운영할 경우 과세자료 증가, 부과·고지 건수 증가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국민 불편비용도 증가한다는 점 및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건강보험 산정 등 재산세를 참고하는 타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